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44

발의연월일: 2022. 3. 24.

발 의 자: 박홍근 · 진성준 · 우원식

김민석 • 윤영덕 • 정일영

이성만 · 김원이 · 윤준병

김주영 · 김성환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운동원은 통상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인 오전 7시 이전부터 퇴근시간인 오후 7시 이후까지 하루 10~12시간 가량거리에 나서 유권자들을 만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노동강도가 높은 유세 활동을 하면서도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임.

이들이 받는 현행 선거법상 하루 수당은 최대 일비 7만원으로 하루 활동시간을 10시간으로 기준할 때 시간당 7천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현실과 동떨어진 수당은 선거운동 지원 업무의 기피 원인이 되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음.

이에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일비의 하한을 최저임금의 100분의 110의 금액(2022년 기준 약 10만원)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135조제2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 및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되,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 (생 략)	수당과 실비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第1項의 手當과 實費의 종	② 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
류와 금액은 中央選舉管理委員	류 및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
會가 정한다.	원회규칙으로 정하되,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100분
	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
	<u>한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